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21.01.05.
개정 2022.05.02.
개정 2022.07.18.
개정 2022.09.13.
개정 2022.10.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한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마이크로전공이란 융합 능력을 배양하고 타 학문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과 또는 학제 간 개설된 부전공보다 작은 이수 단위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마이크로전공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은 참여 학과(전공)의 교수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전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주관학과(전공)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마이크로전공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 신청 시기: 시행 학년도 3개월 이전 소정 기간
2. 신설 절차: 「마이크로전공 신설 제안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 승인(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관학과에서 진행)

④ 마이크로 전공의 효과성, 목적 적합성,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2(개설 마이크로전공) 본 대학교에 개설된 마이크로전공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09.13.)(개정 2022.10.27.)

제5조(교육과정) ① 마이크로전공은 개설목적에 맞도록 전공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필요한 선수과목은 이수하여야 하나, 제1항의 교육과정 구성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마이크로전공의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전공)의 기편성된 과목으로 운영한다.
④ 본 조는 특별한 사업 등의 목적으로 개설한 마이크로전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공 이수) ① 마이크로전공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이크로전공은 소속학과(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전공을 2개 이상 이수한 경우(제1전공 전공과목만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 경우는 제외)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13.) (개정 2022.10.27.)
③ 마이크로전공은 신청 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학기별로 진행한다.
④ 마이크로전공의 신청 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마이크로전공은 최대 3개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점교류를 통해 이수한 타학교의 교과목을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운영학과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학칙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학사운영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설 마이크로전공

마이크로 전공	참여 학과 또는 전공	주관 대학(학과 또는 전공)	도입 시기
미래자동차 (초급)	미래자동차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AI모빌리티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022학년도
미래자동차 (중급)	미래자동차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AI모빌리티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022학년도
미래자동차 (고급)	미래자동차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AI모빌리티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022학년도
수소에너지공정	화학공학과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2022학년도
수소에너지소재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2022학년도
수소에너지기술	화학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022학년도
의료인공지능	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2022학년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	2022학년도